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97
----------	------

제출일자 : 2024. 10. 6.  
제출자 : 달성군수 

## 1. 개정이유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 및 운영사항을 현실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에 따라 관련 기준을 개정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시설이용시간 조정(안 제5조)
- 나. 시설사용료 반환 기한 규정(안 제8조)
- 다. 용어의 뜻, 시설 명칭 변경 및 시설사용료 조정(안 별표 1)
- 라. 시설사용료 감면대상 확대(안 별표 2)

## 3. 조례안 : 따로 붙임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
  -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3)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2) 입법예고(2024. 10. 4. ~ 10. 24.) 결과 : 의견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5)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6)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 (7)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12시”를 “11시”로 한다.

제8조 중 “반환하여야 한다”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근무일 이내 반환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 설 사 용 료(제6조제1항 관련)

1. 용어의 뜻

- 가. “성수기”란 1년 중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나.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은 제외)의 전일(前日)을 말한다.
- 다. “주중”이란 주말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 라. “비수기”란 1년 중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
- 마. “단체”란 제3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자연휴양림 시설을 이용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20명 이상의 사람들로 구성된 일정한 조직체를 말한다.
- 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 사. “달성군민”이란 주민등록표상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아. “다자녀가정”이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단,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 자.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을 말한다.
- 차. “협약 체결 기관·단체”란 자연휴양림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달성군(수탁기관 포함)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단체를 말한다.

## 2. 비슬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기준

구 분		사용기준	사 용 료(원)		기준인원	비 고	
			성수기(주중, 주말 불문) 및 주말	비수기의 주중			
숲속의집		A형(29㎡)	1박	100,000	60,000	4인	
		B형(67㎡)	1박	200,000	120,000	10인	
산림문화휴양관	콘도(1,2)	A형(30㎡)	1박	90,000	60,000	5인	
		B형(60㎡)	1박	180,000	110,000	9인	
	휴양관	A형(21㎡)	1박	70,000	50,000	4인	
		B형(96㎡)	1박	230,000	150,000	16인	
세미나실		196㎡	4시간	200,000	150,000	120인	

## 3. 비슬산자연휴양림 숲속캠핑장 시설사용료 기준

구 분		사용기준	사 용 료(원)		기준인원	비 고	
			성수기(주중, 주말 불문) 및 주말	비수기의 주중			
카라반	두루미		1박	100,000	60,000	4인	
	이팝나무		1박	120,000	80,000	6인	
	참꽃		1박	140,000	100,000	8인	
캠핑데크	소	7x4	1조/1박	25,000	20,000		
	대	8x5		35,000	25,000		
기타	비누, 수건 등 세면도구와 휴대용가스버너, 고기불판은 시설 이용자가 준비해야 한다. (단, 숯불사용금지)						

## 4. 화원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기준

구 분		사용기준	사 용 료(원)		기준인원	비 고	
			성수기(주중, 주말 불문) 및 주말	비수기의 주중			
숲속의집		A형(50㎡)	1박	170,000	100,000	8인	
		B형(68㎡)	1박	200,000	130,000	10인	
산림문화휴양관	휴양관	A형(29㎡)	1박	90,000	60,000	4인	
		B형(101㎡)	1박	240,000	170,000	16인	-
	세미나실	120㎡	4시간	120,000	80,000	30인	

[별표 2]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제7조제1항 관련)

구분	감면대상	기준	감면요율	비 고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캠핑장 (캠핑데크 제외)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요금의 50% 할인	※비수기의 주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요금의 30% 할인	
	국가보훈대상자		요금의 30% 할인	
	다자녀가정		요금의 30% 할인	
	달성군민			요금의 30% 할인
			요금의 10% 할인	
세미나실	단체로 시설을 이용하는 자		요금의 20% 할인	

1. 감면 적용 예약은 감면대상자의 명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렇게 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자(법정대리인 등을 말한다)가 자신의 명의로써 할 수 있다.
2. 감면대상자는 시설 이용 전에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자에게 감면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1호 후단의 경우 예약한 보호자가 동행하여 감면에 필요한 증명서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3. 시설사용료 감면은 1인 1일당 1시설(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세미나실 1일당 1회 포함)에 한한다.
4. 사용료 감면은 중복적용 하지 않으며, 감면 사유가 중복될 경우 감면율이 큰 것을 적용한다.
5. 위 감면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설사용료 감면과 관련하여 협약 체결 기관·단체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협약 내용에 따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이용시간 등)</p> <p>① (생략)</p> <p>② 제3조제1호에 따른 숙박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 시간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p>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15시부터 오후 22시 사이</p> <p>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u>12시</u></p> <p>③ (생략)</p>	<p>제5조(이용시간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p> <p>2. -----<u>11시</u></p> <p>③ (현행과 같음)</p>
<p>제8조(시설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받은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u>반환하여야 한다.</u></p>	<p>제8조(시설사용료의 반환)</p> <p>----- ----- ----- ----- ----- -----<u>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근무일 이내 반환하여야 한다.</u></p>
<p>[별표 1]</p> <p>시 설 사 용 료(제6조제1항 관련)</p> <p>1. 용어의 뜻</p> <p>가. ~ 아. (생략)</p>	<p>[별표 1]</p> <p>시 설 사 용 료(제6조제1항 관련)</p> <p>1. 용어의 뜻</p> <p>가. ~ 아.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자.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p> <p>차. (생략)</p>	<p>자.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특수입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를 말한다.</p> <p>차. (현행과 같음)</p>

## 현 행

## 개 정 안

### 2. 비슬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기준

### 2. 비슬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기준

구 분		사용 기준	사 용 료(원)		기준 인원	비 고
			성수기 (주중, 주말 불문) 및 주말	비수기 의 주중		
숲속의 집	콘도 (1,2)	A형 (30㎡)	1박	90,000	60,000	5인
		B형 (60㎡)	1박	160,000	110,000	9인
	통나무 집	A형 (29㎡)	1박	90,000	60,000	4인
		B형 (67㎡)	1박	180,000	120,000	10인
청소년 수련관		A형 (21㎡)	1박	70,000	50,000	4인
		B형 (96㎡)	1박	200,000	140,000	16인
세미나실		196㎡	4시간	200,000	150,000	120인

구 분		사용 기준	사 용 료(원)		기준 인원	비 고
			성수기 (주중, 주말 불문) 및 주말	비수기 의 주중		
숲속의집		A형 (29㎡)	1박	100,000	60,000	4인
		B형 (67㎡)	1박	200,000	120,000	10인
산림문화 휴양관	콘도 (1,2)	A형 (30㎡)	1박	90,000	60,000	5인
		B형 (60㎡)	1박	180,000	110,000	9인
	휴양 관	A형 (21㎡)	1박	70,000	50,000	4인
		B형 (96㎡)	1박	230,000	150,000	16인
세미나실		196㎡	4시간	200,000	150,000	120인

### 3. 비슬산자연휴양림 숲속캠핑장 시설사용료 기준

### 3. 비슬산자연휴양림 숲속캠핑장 시설사용료 기준

구 분		사용 기준	사 용 료(원)			기준 인원	비 고	
			설수기 (주중, 주말 불문)	비수기				
				주중	주말			
카라반		두루미	1박	100,000	60,000	80,000	4인	
		이팝나무	1박	120,000	80,000	100,000	6인	
		참꽃	1박	140,000	100,000	120,000	8인	
캠핑데크		소	1조/ 1박	7x4	30,000	15,000	20,000	
		대		8x5	40,000	20,000	30,000	
기타	비누, 수건 등 세면도구와 휴대용가스버너, 고기불판은 시설 이용자가 준비해야 한다. (단, 숯불사용금지)							

구 분		사용 기준	사 용 료(원)		기준 인원	비 고	
			설수기 (주중, 주말 불문) 및 주말	비수기의 주중			
							카라반
이팝나무	1박	120,000	80,000	6인			
참꽃	1박	140,000	100,000	8인			
캠핑데크		소	1조/ 1박	7x4	25,000	20,000	
		대		8x5	35,000	25,000	
기타	비누, 수건 등 세면도구와 휴대용가스버너, 고기불판은 시설 이용자가 준비해야 한다. (단, 숯불사용금지)						

<b>현행</b>	<b>개정안</b>
-----------	------------

4. 화원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기준	4. 화원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기준
---------------------	---------------------

구분			사용기준	사용료(원)		기준인원	비고
				성수기(주중, 주말 불문) 및 주말	비수기의 주중		
숲속의집	숲속의 집	A형 (50㎡)	1박	140,000	100,000	8인	
		B형 (68㎡)	1박	180,000	130,000	10인	
산림문화휴양관	휴양관	A형 (29㎡)	1박	90,000	60,000	4인	
		B형 (101㎡)	1박	240,000	170,000	16인	-
	세미나실	120㎡	4시간	120,000	80,000	30인	

구분			사용기준	사용료(원)		기준인원	비고
				성수기(주중, 주말 불문) 및 주말	비수기의 주중		
숲속의집		A형 (50㎡)	1박	170,000	100,000	8인	
		B형 (68㎡)	1박	200,000	130,000	10인	
산림문화휴양관	휴양관	A형 (29㎡)	1박	90,000	60,000	4인	
		B형 (101㎡)	1박	240,000	170,000	16인	
	세미나실	120㎡	4시간	120,000	80,000	30인	

[별표 2]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2]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  
 (제7조제1항 관련)

구분	감면대상	기준	감면요율	비고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청소년수련관, 숲속캠핑장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요금의 50% 할인	※비수기의 주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요금의 30% 할인	
	국가보훈대상자	1~3급	요금의 50% 할인	
		4~7급	요금의 30% 할인	
	다자녀 가정		요금의 30% 할인	
달성군민			요금의 30% 할인	
			요금의 10% 할인	※성수기(주중, 주말 불문) 및 주말
세미나실	단체로 시설을 이용하는 자		요금의 20% 할인	

구분	감면대상	기준	감면요율	비고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캠핑장 (캠핑데크 제외)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요금의 50% 할인	※비수기의 주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요금의 30% 할인	
	국가보훈대상자		요금의 30% 할인	
	다자녀 가정		요금의 30% 할인	
	달성군민			
			요금의 10% 할인	※성수기(주중, 주말 불문) 및 주말
세미나실	단체로 시설을 이용하는 자		요금의 20% 할인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 관 계 법 령

##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 ①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①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은 해당 자연휴양림등의 조성·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만 해당한다.

1. 국민 및 그 수행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3.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장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10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10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0의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사상자(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의사자유족, 의사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10의5. 「체육인 복지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배우자,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활동을 직접 보조하는 사람 1명(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동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연금을 지급받을 선순위 유족 1명

10의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

14. 해당 자연휴양림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15. 해당 자연휴양림등에 있는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료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등을 조성한 자가 정한다.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도개선 권고) ②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정의)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